

『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·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

3. 주요내용

- 10개 통·리 증설에 따른 통리장 정수 개정
 - 통·리장 10명 증원 : 610개 통리장(통장 439, 리장 171)
⇒ 620개 통리장(통장 448, 리장 172)
 - 산동면 1명, 선주원남동 2명, 인동동 7명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
 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라 통리의 수가 일부 조정되어 통리장의 정수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,
- 주요 내용으로는
 - 통리장의 정수를 당초 610명에서 산동면 1명, 선주원남동 2명,

인동동 7명 등 총 10명이 증가된 620명으로 조정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▪ 본 조례안은

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에 맞게 통리장의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